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042
----------	------

2022. 6. 21.(화)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2년 6월 3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6월 3일

라. 상정일자 : 2022년 6월 14일

- 제4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중근 보건복지국장)

가. 제안사유

- 전몰군경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몰군경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전몰군경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 지급대상자 선정 : 도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전몰군경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수당 지급 정지 및 환수 규정 신설(안 제7조의3)
 - 지급 정지 : 사망, 국적 상실, 주민등록 말소, 행방불명, 타 시도 전출 등
 - 수당 환수 : 부정수령, 사유 소멸, 잘못 지급 등

3. 검토보고 요지 (이덕항 수석전문위원)

가. 제출배경

- 본 조례개정안은 전몰군경유족에 대한 복지증진 및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몰군경유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7조의2는 보훈명예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는 전몰군경유족의 범위와 선순위자의 결정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전몰군경유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조에 따른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전몰군경의 범위가 넓고 그에 따른 유족의 연령도 다양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한정한 근거 및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 유족 중 선순위자 결정 방법 및 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 11. 26.>

1.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7조의3은 보훈명예수당 지급 정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지급대상자의 사망, 국적상실, 주민등록 말소 등 보훈명예수당을 지급 할 수 없는 명백한 경우에 한해 지급을 정지하고, 거짓 및 부정 수급,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정한 수당 지급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비용추계 관련 전몰군경 보훈명예수당 지급예정액은 1인 월 20천원으로,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1인 월 50천원과 차이가 있어 지급액 산정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몰군경유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몰군경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 측면에서 타당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으나,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한정한 것과 수당 지급액을 1인 월 20천원으로 산정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보훈명예수당)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조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65세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자의 결정 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당 지급의 대상 · 금액 · 기준 ·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의3(수당의 지급 정지 및 환수) ① 도지사는 제7조의2에 따른 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5. 다른 시·도로 전출한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당의 지급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도지사는 제7조의2에 따른 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았던 수당을 기간을 정하여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2.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7조의2(보훈명예수당) ① 도지</u></p> <p><u>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u></p> <p><u>갖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u></p> <p><u>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u></p> <p><u>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u></p> <p><u>제5조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u></p> <p><u>(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예</u></p> <p><u>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u></p> <p><u>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u></p> <p><u>수 있다.</u></p> <p><u>1.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u></p> <p><u>있을 것</u></p> <p><u>2. 65세 이상일 것</u></p> <p><u>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유족</u></p> <p><u>중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한다.</u></p> <p><u>이 경우 선순위자의 결정 방법</u></p> <p><u>및 기준에 대해서는 법 제13조</u></p> <p><u>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u></p> <p><u>다.</u></p> <p><u>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u></p> <p><u>사항 외에 수당 지급의 대상 ·</u></p> <p><u>금액 · 기준 · 절차 및 방법 등에</u></p> <p><u>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u></p> <p><u>로 정한다.</u></p>
<u><신 설></u>	<u>제7조의3(수당의 지급 정지 및</u>

환수) ① 도지사는 제7조의2에 따른 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5. 다른 시·도로 전출한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당의 지급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7조의2에 따른 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았던 수당을 기간을 정하여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2.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관련법령 발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78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6.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8.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9.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제9조(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퇴직 전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역일·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제1항, 제22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지원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퇴직 전 제14조의2제1항, 제22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지원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역일·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③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9조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이 제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79조제1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④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제12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 11. 26.>

1.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이 수당을 받을 권리 있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移轉)되지 아니한다. 다만, 유족 중 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 ②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사람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양로시설이나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면 그 지원을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지원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수당(무공영예수당은 제외한다)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3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39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지원비, 제42조 및 제42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및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2.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훈급여금 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징수할 때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제78조(보상의 정지)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타 시도의 경우 전몰군경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조례에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전몰군경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충청북도의 경우 이에 대한 조례의 직접적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임
- 이에 전몰군경유족의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도내 전몰군경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따른 소요예산 발생

3. 관련조문

-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의2(보훈명예수당)
 -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조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65세 이상일 것
 -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자의 결정 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당 지급의 대상 · 금액 · 기준 ·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전몰군경유족을 대상으로 산출
- 대상 : 1,113명(65세 이상) *22.1월말 기준

나. 추계 결과 : 2022. 7월부터 향후 5년간 1,202,040천원 *1인당 월 2만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불임

(단위: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2년 7월~)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보훈명예수당 지원	1,202,040	133,560	267,120	267,120	267,120	267,120

6. 작성자 :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장 서동경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7월~)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133,560	267,120	267,120	267,120	267,120	1,202,040
국비	-	-	-	-	-	
도비	133,560	267,120	267,120	267,120	267,120	1,202,040
시군비	-	-	-	-	-	
세 출						
보훈명예수당 지원	133,560	267,120	267,120	267,120	267,120	1,202,040
재원 조달	133,560	267,120	267,120	267,120	267,120	1,202,040
의존 재원	소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계	133,560	267,120	267,120	267,120	1,202,040
	지방세	133,560	267,120	267,120	267,120	1,202,040
	세외수입					
	지방채					
	기금					
	특별회계					
	시·군비					
	기타 (민간자부담)					

* 명예수당 : 1인당 월 2만원